

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휘소의 명칭변경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- 당초 : 「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
- 변경 : 「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」

나. 재난현장 총괄 및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로 명칭 변경(안 제4조 등)

- 당초 : 재난현장 통합지휘소
- 변경 :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

다. 현장지휘관 지정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체계를 간소화 함(안 제7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”를 “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총괄·지휘하기”를 “총괄·지원하기”로,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총괄·지휘하기”를 “총괄·지원하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”을 “통합지원본부 설치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)”을 “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재난발생시”를 “재난발생 시”로, “통합지휘소”를 “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“통합지원본부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사건사고”를 “사건·사고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”를

“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 본부의 장은 부시장이 되며,”로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임무조정”을 “임무 조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, 현장조치지원반, 긴급복구지원반”을 “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, 의료지원반, 행정지원반, 장례지원반, 이재민구호반, 언론대응반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통합지휘소와”를 “통합지원본부와”로, “통합지휘소에”를 “통합지원본부에”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계획 통보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계획 통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를”을 “통합지원본부를”로, “통합지휘소의 위치, 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의 위치, 통합지원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의 위치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의 위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의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의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각각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, “총괄·지휘하여야”를 “총괄·지원하여야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통합지휘소 철수)”를 “(통합지원본부 철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통합지휘소의”를 “통합지원본부의”로, “통합지휘가”를 “통합지원이”로, “통합지휘소를”을 “통합지원본부를”로 한다.

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지휘소”를 “통합지원본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「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 조례	구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제5항에 따라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<u>총괄·지휘하기</u>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재난현장 <u>통합지휘소</u>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총괄·지원하기</u> ----- ----- <u>통합지원본부</u> ----- ----- 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"재난현장 통합대응"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<u>총괄·지휘하기</u>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 3. (생략) 4. "현장지휘관"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<u>통합대응</u>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재난현장 통합지휘소(이하 "통합지휘소"라 한다)</u> 의 장이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총괄·지원하기</u> ----- -----. 3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
5.·6. (생략)

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
현장지휘관 지정

제4조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) ①

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
해당되는 재난발생시, 「구미시
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」
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
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
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
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
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
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
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
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
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
응이 필요한 재난·재해가 발
생한 경우

제5조(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)

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4
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

5.·6. (현행과 같음)

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

제4조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)

① -----
----- 재난발생시-----

----- 재난현장
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
본부"라 한다)---.

② -----

----- 통합지원본
부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--- 사건·사고 -----

제5조(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

무)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
통합지원 본부의 장은 부시장이

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
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·운영
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
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
은 임무를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
조정 및 부여

5. ~ 7. (생략)

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
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,
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
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
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
에 종합상황관리반, 현장조치지
원반,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
반을 둘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6조(업무연락관 파견) 대책본부
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
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
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
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
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
으며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

되며, -----
---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②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임
무 조정 --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통합지원본부
내에 상황총괄반, 의료지원반,
행정지원반, 장례지원반, 이재
민구호반, 언론대응반 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업무연락관 파견) -----
--- 통합지원본부와 -----

----- 통합지원본부에 -----
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.

제7조(현장지휘관 지정)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.

1.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: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·국장(실·국장이 없는 경우, 관련부서의 장)

2.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: 해당 재난대응업무를 총괄·수행하는 실·국장(실·국장이 없는 경우, 소관부서의 장)

제8조(통합지휘소 설치·운영계획 통보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중앙사고수습본부, 경상북

-----.

<삭 제>

제8조(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계획 통보) ① -----

----- 통합지원본부를 -----

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,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·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9조(재난현장 상황전파)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)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제14조(통합지휘소의 위치)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----- 통합지원본부의 위치,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<삭 제>

제9조(재난현장 상황전파) ①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)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14조(통합지원본부의 위치) ① -----

----- 통합지원본부-----.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)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,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재난현장 통합대응)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·지휘하여야 한다.

제18조(응급의료 활동 지원) ① 「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에 따

② 통합지원본부의 -----
----- 통합지원본부의 ----

-----.

제15조(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) ① -----

-----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②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16조(재난현장 통합대응)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 총괄·지원하여야 --.

제18조(응급의료 활동 지원) ① -

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
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
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
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
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9조(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
구)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
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
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
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
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
야 한다.

제22조(복구체계의로의 전환) ①
(생략)

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
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
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
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
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
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3조(통합지휘소 철수) 통합지
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
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
우,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
있다.

- 통합지원본부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
구)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22조(복구체계의로의 전환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통합지원본부-----

-----.

제23조(통합지원본부 철수) 통합
지원본부의 -----
-- 통합지원이 -----
-- 통합지원본부를 -----
---.

제24조(권한의 위임)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<u>통합지휘소</u> 의 장에게 위임한다. 1. ~ 10. (생략)	제24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 <u>통합지원본부</u>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
--	--

관계법령

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~ ② 생략

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·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소관 실 · 과		안전재난과
입 안 자	과 장	장 덕 수
	담 당	이 연 희
	담 당 자	이 혁 진 (480-6738)